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977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담 사용자 추가(박성훈의원안)	2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977호)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2. 24.

(3) 회 부 일 : 2026. 2.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담 사용자 추가(박성훈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체납자료의 제공(제110조) ○ 체납자료의 제공(제1항) - (제공 주체)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 - (목적)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요구권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관련사항 미규정 - (제공대상) · 체납기간 1년 도과 및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자 · 연간 3회 이상 체납 및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자 - (제공 자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	□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추가 ○ 체납자료의 제공 요구권자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요구권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박성훈의원안 2026. 2. 24. 발의(의안번호 16977)

□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현행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는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체납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명시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추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이에 대해 정부는 ① 사업주에게 개인 과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② 인사상 불이익 등 사적 제재가 우려되며, ③ 신용정보기관과 달리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적 재산상태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음.

첫째,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간접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음. 현행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신용

1) 「국세징수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자의 경제활동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실 납세를 유도하려는 취지임²⁾. 개정안은 체납자의 사용자도 체납자료 제공 요구권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용자 및 직장에도 해당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수단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단순한 사인(私人)이 아니라 일정한 공적 부담을 함께 부담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 사실 정보 취득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안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용자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이 「국세징수법」상 허용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세징수법」은 체납자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목적을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음.³⁾ 현행법상 허용된 체납자료 제공 대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⁴⁾이 유일한데, 신용정보집중기관

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0124, 1996.10.2. 정부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 「국세징수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이하 생략)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이하 “집중관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기 위한 기관으로, 신용위험의 평가·관리 기능과 채납정보 활용 필요성 간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채납자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① 근로관계의 당사자일 뿐 국세징수의 집행 주체가 아니고, ② 채납액 회수에 관한 공적 권한이나 책임을 직접 부담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채납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세징수 실효성 제고 등 공익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함. 따라서 개정안이 채납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수단이 현행법상 채납자료 제공 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로부터 채납자의 채납자료 확인 필요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임.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⁵⁾는 보험료 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춘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춘 것
(이하 생략)

5)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담 주체를 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로 부터 곧바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반적 국세 체납정보까지 확인할 권한 또는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② 건강보험료 부담의무는 사회보험 관련 제도에 부과되는 의무이고, 국세 체납자료는 국가 조세채권 관리에 관한 정보이므로 양자는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체납자료가 고용 관계에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우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세징수법」은 해당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⁶⁾ 체납자의 사용자가 자료를 요구하는 업무 목적 범위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와 달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료를 인사·승진·보직·계약갱신 등 근로관계에서 사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음.

넷째, 체납자료는 개인의 경제상태와 신용 상황을 추단하게 하는 정보로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개인정보에 해당함. 따라서 체납자료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권리⁷⁾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는 없는지, 체납정보가 근로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국세징수법」 제110조(체납자료의 제공)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7)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하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여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음.

계약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것이 채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49